『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』

정관 개정 사항 보고

□ 관 련 근 거

○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②항
(정관 변경시 시장 인가 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)

□ 개 정 사 유

○ 서울시 공공자전거 확대 계획(상반기 6천대 증차)에 따라 관리소 증설과 안내센터 추가인력 정원 반영

○ 서울시 「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」에 따라 교통정보 VMS 등 유지보수 직영화로 인한 인력 정원 반영

○ 이사회의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“정관”에 정하도록 “지방공기업법”에 규정되어 있으나, “정관”에 “이사회운영규정”으로의 위임 규정이 미비하여 관련 근거 보완 (이사회 대리 출석 근거 마련)

□ 주 요 내 용

가. 공공자전거운영처 정원 반영 : 일반직 +6명

○ 3급 이하 +6명 (소장 1명, 운영 2명, 정비 1명, 배송 1명, 전산 1명)

현 재	⇨	개 정(안)
14명		20명

나. 교통정보처 정원 반영 : 일반직 +4명

○ 3급 이하 +4명 (직영정비반 4명)

현 재	⇨	개 정(안)
54명		58명

정관 개정 후 총정원

▪ 2,708명 ⇨ 2,718명 (+10명)

다. 이사회 운영사항 위임근거 신설

○ 정관 제23조(설치 및 구성)에 “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”라는 위임규정 명확화

라. 부 칙 신 설

○ 제1조(시행일) : 공포일부터 시행

□ 참 고 사 항

가. 관련근거

○ 「`17년 서울 공공자전거대행 사업 운영 인력 계획 송부」
(서울시 자전거정책과-614호, `17.1.3)

○ 「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알림」
(서울시 교통정보과-13650호, `16.8.26)

○ 「투자·출연기관 이사회운영 개선사항 통보」
(서울시 공기업담당관-15293호, `16.12.27)

나. 절 차 : 이사회 의결(`17.2.14),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시장인가 후 공포·시행

□ 개 정 사 항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22조(조직 및 정원) 공단의 조직은 “별표1”, 정원은“별표2”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	제22조(조직 및 정원) 공단의 조직은 “별표1”, 정원은“별표2”와 같으며,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.	조문변동 없이 “별표2”만 변경 (별지참조)
제23조(설치 및 구성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	제23조(설치 및 구성) ① ~ ③ (생략) ④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.	제4항 신설
부 칙 (신 설)	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	

< 별표 2 > 현 행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2,708명】

□ 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서비스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
정 원	2,708	6	2,207	25	45	2,137	495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

< 별표 2 > 개 정

정 원 표

【총 정원 : 2,718명】

□ 임원 및 일반직, 서비스직

(단위 : 명)

구 분	계	임원	일 반 직				서비스직
			소계	1급	2급	3급 이하	
정 원	2,718	6	2,217	25	45	2,147	495

※ 부서별 정원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책임 하에 적의배분 시행